



KOLAS-R-007 : 2025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인정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설정값(assigned value)”이란 숙련도시험 아이템의 특정 성질 또는 특성에 기인하는 값을 말한다.
2. “시험소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란 둘 이상의 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아이টে에 대하여 측정 또는 시험의 설계, 수행 및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요령의 목적상, 시험소라는 용어는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3. “측정심사(measurement audit)”란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 또는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 RM)”이란 측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

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5.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CRM)”이란 하나 이상의 명시된 특성에 대해 특성값과 불확도 및 측정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질인증서를 동반하여,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을 말한다.
6. “참가자/기관(participant)”이란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의한 수행도 평가를 위해 그들의 결과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7.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시험소간 비교를 통하여 사전에 수립된 기준에 따라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메디컬 분야의 일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이나 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외부품질평가(EQA)”(KS Q ISO/IEC 17043 부속서 A 참조) 관련 용어를 활용한다. 이 기준의 요건은 숙련도시험 정의를 만족하는 EQA 활동만을 포함한다.
8. “숙련도시험 아이템(proficiency test item)”이란 숙련도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샘플, 제품, 아티팩트(artefact), 표준물질, 장비, 측정표준 혹은 일련의 데이터의 집합 또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
9. “숙련도시험 운영기관(proficiency testing provider)”이란 KS Q ISO/IEC 17043에 따라 인정받은 KOLAS 공인기관으로서, 숙련도시험 스킴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활동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10. “숙련도시험 스킴(proficiency testing scheme)”이란 시험, 측정, 교정 또는 검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라운드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숙련도시험을 말하며, 숙련도시험 스킴은 숙련도시험 아이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스킴’ 대신 ‘프로

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및 법령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및 법령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 KS Q ISO/IEC 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적 방법
3. ILAC P9 ILAC Policy for Proficiency Testing and/or Interlaboratory comparisons other than Proficiency Testing

제2장 숙련도시험 운영스킴 참가 요구사항 등

제4조(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등) ① KOLAS 공인기관이 참가하여야 하는 숙련도시험의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각 호에서 규정된 인정스킴별 대분류 또는 중분류로 구분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인정범위를 고려하여 숙련도시험에 대한 참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실적을 인정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개 항목 이상
2. KOLAS 공인교정기관 :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

3.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 메디컬시험은 제1호를 교정은 제2호에 따른 실적

④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하여야 한다.

1. KOLAS 공인교정기관 또는 KOLAS 공인시험기관 : 중분류별 3년에 1회 이상

2.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년에 2회 이상

3.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정과 시험은 제1호를 메디컬시험은 제2호에 따른 실적

⑤ KOLAS 공인기관이 시험 또는 교정을 외부공급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은 평가시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LAS 공인기관이 인정 분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숙련도시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중분류일지라도 소항목간 특성이 전혀 다른 경우(시험방법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도시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KOLAS 공인교정기관 :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

2.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대분류별 1개 항목 이상

3.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또는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

기관 : 인정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시험 또는 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 교정은 제1호를 메디컬시험은 제2호에 따른 실적

- ⑦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KOLAS 인정분야를 확대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인정기구의 장은 중분류 기준으로 2회 연속으로 불만족한 결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을 준용한다.
- ⑨ 필요한 경우에 인정기구의 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서 운영하는 국제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①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 스킴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시험이 없거나 인정을 신규 또는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별표 1 제5호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2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 ② 별표 1의 숙련도시험 스킴 중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KS Q ISO/IEC 17043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활용하여 검토

한다.

- ③ 메디컬시험분야로 인정받은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는 숙련도시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정도관리 실적은 KS Q ISO/IEC 17043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부합여부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 ④ 인정기구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숙련도시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에 평가사로 하여금 숙련도시험 아이টে็ม으로 신청기관의 시험(메디컬 시험 포함) 또는 교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한 숙련도시험 스킴일 경우라도 운영절차, 수행도, 평가결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 실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6조(운영스킴 공지) ①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이 숙련도시험 참가를 계획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에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7조(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①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정기구는 시정조치가 적절함이 확인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는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파악된 잠재적인 원인

2. 시정조치 내용

3. 참여기관이 취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한 증빙자료(예:표준 물질을 이용한 재시험 결과 등)

③ 해외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한 기관이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시정조치 계획을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실시되고 결과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8조(위원회 심의)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평가사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KOLAS 공인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정 또는 예방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불만족 결과가 아닌 의심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참가기관의 차기 평가시 평가반이 확인하며,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유의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8조(처분 등) ① 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17조(행정처분 등)에 따른다.

② 숙련도 시험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의 재개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장 KOLAS 공인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 활용 등

제9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범위의 시험 또는 교정 역량의 입증을 위해 숙련도시험 참가를 포함하여 KS Q ISO/IEC 17025 7.7항에 따른 결과의 유효성 보장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해 평가하여 그들의 수행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유추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숙련도시험 아이템의 출처 및 특성
2. 사용된 시험 방법들과 가능한 경우, 특정 방법들에 따른 결과의 설정
3. 숙련도시험의 구성(예를 들면, 통계적 모델, 반복 횟수, 측정할 파라미터, 수행방법 등)
4. 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사용한 기준

제10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① 인정기구는 참가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을 수행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의심 통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차기 평가 시 평가반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숙련도시험 참가 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스킴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 스킴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인정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요령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숙련도시험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22-0047호, 2022.04.08)에 의한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결과의 활용, KOLAS 공인기관의 조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숙련도시험 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시점에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참가에 대한 사항을 이 고시 시행 시점 2년 후부터 적용한다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1]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제6조 관련)

1.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2.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 유럽인정기구협력체(EA) 등 지역 시험기관 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ISO/IEC 17043에 부합한 숙련도시험 스킴
3.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accreditation)한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4.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으로 KS Q ISO/IEC 17043의 요건을 준수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recognition)하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제1호 ~ 제4호의 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제5호의 스킴이 선정가능하며, 별표 2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무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2]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제6조 제1항 관련)

1. 방침

- 가.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1의 제1호 ~ 제4호의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실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신청 시 시험소간 비교시험을 우선으로 한다.
- 나. 교정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숙련도시험 등) 제3항에 명시된 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신청 및 접수

- 가.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신청기관은 해당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에 제출한다.
 - 1) 신청기관의 명칭, 법인 및 사업장 소재지 주소
 - 2) 시험소(자)간 시험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관여하는 주관자 및 기타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 3) 신청기관의 인정분야 및 인정신청 예정 분야
 - 4) 해당분야 숙련도시험 스킴의 참가 실적 및 계획
 - 5)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의 검토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불참 사유
 - 6)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계획서
 - 가)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참여할 잠정적인 참가자 및 참가자 수
 - 나) 측정량 및 관련된 시험, 측정 또는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다) 품목(item)의 제작, 저장 및 배포요건
 - 라) 품목의 균질성, 안정성 평가 방법 및 결과
 - 마) 해당되는 경우, 설정값의 근원 또는 결정방법, 측정소급성 및 측정불확도
 - 바) 참가자의 수행도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 스킴 참가요강
 - 아) 결과보고서(양식)

- 7) 자체 개발한 시험방법인 경우,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토자료
 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에 제출한다.
 다. 인정기구는 필요할 경우 가, 나항의 구비서류의 작성예시를 공고할 수 있다.

3.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계획 검토 및 승인통보

- 가. 인정기구는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의 적절성 검토 및 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인정기구는 계획 검토를 위한 신청스킴의 신청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승인을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 등으로 신청한 스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거부한다. 그 외 검토가 완료될 경우 승인공문을 통해 통보를 진행한다.
 1) 별표 1의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구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가 가능한 경우
 2) 신청스킴이 KS Q ISO/IEC 1704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실시

- 가. 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스킴/프로그램의 실시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KOLAS 공인숙련도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험소(자)간 비교 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스킴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인정기구에서 숙련도시험 평가사로 하여금 입회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평가에 대한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한다.
 나. 운영기관은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교정기관 측정심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측정심사,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때 입회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소간 비교시험의 경우에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행도 검토

가. 운영기관은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의 실시 결과를 통계적 방법에 의거 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참가기관의 결과보고서 등 단위사용의 적합성
- 2) 원시 데이터(Raw data), 결과보고서 등 데이터작성 및 처리의 적합성
- 3) 불확도 추정 보고서 등 불확도 평가 및 표현방법의 적합성
- 4) 측정결과의 적합성(E_n 값 등)
- 5) 종합의견

나. 운영기관은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 후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에 게 통보하고 최종결과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가 불만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참가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한 이후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인정기구 평가(정기검사 포함)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이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은 해당 운영기관의 인정기구 평가(정기검사 포함) 시 평가한다.

6. 기밀유지

가. 참가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정보는 평가사 및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필요시 인정기구는 참가기관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시험결과를 활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다. 참가기관 그룹은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상호 지원의 목적으로 그룹 내에서 기밀유지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 측정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구분	[] 시험소간 비교시험 [] 시험자간 비교시험 [] 측정심사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및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분야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및 계획(3년주기) 2. 중분류별 숙련도시험 체크리스트 3.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계획서 4. 참가요강 5.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결과 6. 신청기관의 인정분야(전체) 및 인정신청 예정 분야 7. 인정기구에서 허용하는 숙련도 스킵의 검토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불참가 사유 8. 자체개발한 시험방법인 경우,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토자료	수수료 해당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분야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교정항목(교정유형)		측정범위	
	교정 · 측정능력(신뢰수준 약 95%, $k = 2$)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및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시험소(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